

##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[ 2019. 4. 1 ] 조례 제857호

일부개정 2022. 10. 28 조례 제1054호  
일부개정 2025. 10. 10 조례 제124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증평군 주차장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5. 10. 10]

**제2조(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)**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(이하 “부설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
④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,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
⑤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3조(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)**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2. 10. 28>

② 삭제 <2022. 10. 28>

③ 주차장 유료 운영 종료 2시간 전부터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.

**제4조(주차요금의 감면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 <개정 2022. 10. 28, 2025. 10. 10>

1. 공무수행 중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

##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

2.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
  3.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
  4. 「증평군 주차장 조례」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5. 민원인 차량으로 별표 2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별표 3의 민원방문 확인도장을 받은 경우(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, 2시간 초과 시 매10분 마다 300원씩 가산)
  6.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주관하는 행사, 회의, 교육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
  7. 삭제 <2022. 10. 28>
  8.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
  9. 본청 직원 중 부상·임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·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
  10. 문서수발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직원의 차량
- ② 주차요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「증평군 주차장 조례」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2. 10. 28, 2025. 10. 10>
1. 삭제 <2025. 10. 10>
  2. 삭제 <2025. 10. 10>
  3. 삭제 <2025. 10. 10>
  4. 삭제 <2025. 10. 10>
  5. 삭제 <2025. 10. 10>
  6. 삭제 <2025. 10. 10>
  7. 삭제 <2025. 10. 10>
- 7의2. 삭제 <2025. 10. 10>
- 7의3. 삭제 <2025. 10. 10>
8. 삭제 <2025. 10. 10>

제5조(관리자의 지정)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부설주차장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5. 10. 10]

제6조(방치차량의 조치) ①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장

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·보관할 수 있다.

② 차량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·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「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차요금 및 견인료, 보관료 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0. 28>

제7조(안내표지판 설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민원인 등 부설주차장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부설주차장 운영시간
2. 부설주차장 주차요금
3. 이용자의 준수사항
4.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
5. 손해배상책임 등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·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0>

1.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
- 1의2. 주차장 내 서행 및 안전운행
- 1의3.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
- 1의4. 장기간 주차 및 방치 금지
2. 주차와 관련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
3.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
4.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
5.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
6. 그 밖에 부설주차장 이용·관리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여 사전에 알린 사항

제9조(주차의 제한 및 이동)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을 부설주차장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0. 10>

1. 차량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

##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

2.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
3. 이용자 또는 그 일행이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
4. 이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5.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·훈련 등의 사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
- 5의2. 부설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
6. 그 밖에 군수가 부설주차장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수탁사업자
2. 위탁업무의 내용
3. 위탁업무의 개시일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0. 28 조례 제105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10. 10 조례 제124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2. 10. 28>

## 주차요금

최초 30분 이하	30분 초과부터 40분이하	40분 초과 시부터 매 10분마다
무료	1,000원	300원 ※ 10분 미만은 10분으로 한다.

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

[별표 2] <개정 2022. 10. 28>

민원방문 확인증 (2시간 이내 무료)	
주차일시	년 월 일( : ~ : )
방문부서	
방문목적	
확인인	담당직원: (서명 또는 인)

※ 참고: 부설주차장 운영 사정에 따라 달리 기재할 수 있음.

[별표 3]

### 민원방문 확인도장

